

조사 결과 및 조치할 사항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해외문화 홍보원	<p>○ 주재국적 행정직원을 채용하면서 「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」(외교부 훈령) 제5조(채용방법) 및 「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」 제18조(채용승인절차)에 따른 보안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, '●●문화원 기타직 행정직원 채용후보자 조건부 채용승인'에 따른 승인 조건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해 해외문화홍보원에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</p> <p>☞ 행정직원을 채용하면서 「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성 심사 등을 명확하게 이행(확인)하지 않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●●문화원에 “주의” 조치</p>